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근로자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를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 유입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9. 9.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소유 및 임차) 중인 경기도 관내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법인 및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운용(소유 및 임차)시, 기숙사 입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4개월(최대 120만원) 지원
 - ※ 기업 명의 예금주인 계좌로 지급
- (지원금액) 기숙사 입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4개월(최대 120만원)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 '24.4.25. ~ 9.20 기간 중 기숙사 입주 정규직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전제조건) 포함 5인
- 지원규모 : 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기간 : '24. 9. 9. ~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구 분	주 요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대 상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기준(본사,공장,지사) ■ (기업형태) 아래의 지원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지원대상업종]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대·기아차 협력사(산업분류코드 무관, 우선 순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현대·기아차 협력사 인정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유효한 SQ인증서(현대·기아차 23차협력사 공급자 품질인증제도) 보유 기업 ■ 원청(현대·기아차)에서 협력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선정심사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이 현대·기아차에 확인 </div> ② 자동차부품제조업(C30) 기업(별표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운용) 기업(법인 및 사업주) 명의의 소유 혹은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24.4.25. ~ 9.20 (교보취득일 기준) 기간 중 기숙사 입주 정규직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자(전제조건) 포함 5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오피스텔,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법인 또는 사업주) 외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div>
<p style="text-align: center;">기숙사 거주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요건) ‘24.4.25.~ 9.20(교보취득일 기준) 기간 중 신규 취업자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 - (만) 15세 이상인 근로자 <p>*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기업(법인 및 사업주)의 명의를 임대인으로 한 임차 계약(전·월세 포함)을 체결한 물건이 아닌 경우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기타 주거지원 관련 지원금 수혜자 또는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신청일 기준, 중도포기 포함) ■ 그 외 사업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iv>

3. 신청절차

○ 사업 참여 방법

-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gyef.or.kr/>) 통한 신청

[지원방법]

1.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yef.or.kr)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경총소식' → '공지사항' 메뉴 클릭
3. 「2024년 경기지역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클릭
4. 참여의향서 신청 폼(링크) URL 접속.신청 → 사업 수행기관(경기경총) 확인.검토
5. 사업수행기관(경기경총)이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으로 신청 서류 등 안내 연락
6.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첨부 후 (yoonjs04@gyef.or.kr) 메일 제출

※참여신청의향서 폼(링크) 신청 후, 반드시 안내에 따른 관련 신청서류까지 제출 완료해야 함

[유의 사항]

- 기업이 참여의향서 신청 폼(링크)을 제출하여도 반드시 공고문 상 붙임의 신청 서류를 모두 접수하여야 사업 참여가 완료됨
- 신청 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 추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비인원으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에서 개별 연락 예정

[추진 절차]

단계	수행방법
지침 수립, 사업 공고	·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	
참여의향서 신청 폼(링크)	· (참 여 자) 참여의향서 신청 폼(링크)
↓	
참여자격조건 검토	· (수행기관) 참여자격조건 검토 후 통지
↓	
참여신청	· (참 여 자) 참여신청서 제출
↓	
참여자 승인	· (수행기관) 참여자 승인 및 통보
↓	
지원금 지급신청	· (참 여 자) 회차별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참여신청의향서 QR 코드]

참여 의향서 작성 QR코드 OR 링크		https://naver.me/GL8rhEij
-------------------------------------	---	---

※ 참여신청의향서(인사담당자용) 필수 작성(참여신청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사업참여 적격성 검토·통지 및 신청 서류 제출 안내)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사업 참여 신청 서류	1 [서식1]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협약서(기업)	1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근로자)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각 1부
	8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임차시)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시)	1부
	9 통장 사본	1부
	10 기숙사 이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1 사업장 업종코드확인서	1부
	12 (해당시) SQ인증서(현대·기아차 2·3차협력사 품질인증제도)	1부
	13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	1부
	14 기타 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지원금 신청 서류	1 [서식4]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서식5] 기숙사 거주 확인서(근로자)	각 1부
	3 (해당시) [서식6] 이용근로자 공실/변경 신고서 1부	1부
	4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1부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신청일 기준)	1부
	6 월세 해당월분 이체확인증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입내역(증명서)	1부
	7 기타 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세부 사업 내용

- 기업(법인 및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소유·임차(월세·전세) 운용 시, 임차료(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기숙사 운영비용 지원
 - 기업(법인 및 사업주)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업(법인 및 사업주)이 건물주로서 기숙사를 소유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
 - * 기업이 근로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용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4개월 이내
 - 임차비 혹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3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실액 지원
 - '24.4.25.~9.20 기간 중 기숙사 입주 정규직 신규 채용자 1인 이상을 전제로 기업당 5인 이하 지원
 - '24.4.25.~9.20 기간 중 신규 채용 정규직 근로자(최소 1인 이상) 외 지원금 대상 근로자(최대 4인)는 '24.4.25.~9.20 기간 중 입사기간에 구애받지 않음
 - 기숙사 입주 임대차 계약기간은 '24.4.25.~9.20 기간 중 기간에 구애받지 않음
 -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입사일부터 1회차 지원금 신청일까지의 기숙사 입주기간 확인 후 지원금 소급 지원 가능
 - 지원금 외 임차비 등 차액은 사업주 부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의 근무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 관외 소재 기숙사의 경우에도 근무지가 경기도에 있을 시 지원 대상 포함
- 사업주는 기숙사의 임대차 운용시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서류, 기숙사의 직접소유 운용시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대출 은행에 선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지원 중단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수행기관에 통보(공문)

6. 문의 및 상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4팀 (☎031-289-3485~7,34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NO	입주 근로자				임차현황			
	성명	생년월일	고용보험 취득일	연락처	사용구분 (단독/공동)	월 임차료	신청금액 *1인한도 30만원	비고
1					단독	500,000	300,000	신규
2					공동	800,000	600,000	기존
3								신규
4								
5								
계			()명	월 임차료 : 1,300,000원 (월 지원요청금액 : 900,000원)				

※ 입주 근로자 기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 수행기관은 지원 대상 기업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접수서류가 적합한 경우 접수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기숙사 인원 1인당 월 임차료 최대 30만원 지원.

기숙사 인원 1인당 월 임차료 30만원 미만 시 실납부 임차료만큼 지원

(예시1) A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인 30만원 지원.

(예시2) B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25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인 25만원 지원.

(예시3) C투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6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인 60만원 지원.

(예시4) D투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8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인 60만원 지원.

[서식2]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협약서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메일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	전화번호	
	휴대폰		메일	
<p>※ 동의·확인·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 또는 ‘✓’ 처리</p> <p>①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p> <p>■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서식3]</p> <p>② 사업 참여의사 확인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p> <p>■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확인하고,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p> <p>③ 중복지원 금지 협약 □협약함 □협약하지 않음</p> <p>■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협약합니다.</p>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실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경기도·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등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경기도·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경기도·고용노동부·(사)경기경영자총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경기도·고용노동부·(사)경기경영자총협회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경기도·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경기도·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서명 또는 인)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서식6]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변경 신고서

- 관련근거 : (신청일자 :) 기숙사 지원신청서
- 기숙사 이용을 신청했으나, 해당 사유에 따른 기숙사 공실이 발생한 바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기숙사 이용 노동자 현황

당 초		변 경	
성 명		성 명	
기숙사 이용기간		직 급	
		근무기간	
공실 발생일		기숙사 이용기간	
공실 발생사유		기숙사 입주일	

-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의거하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덧붙임 서류 제출 불필요
- ※ 공실 발생사유는 퇴사, 휴직 및 결혼에 의한 주거지 변경 등 기타 의견 작성 요망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지원업체로 기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 변경현황에 대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실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자동차산업 인정 분류코드

* 제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엔진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 엔진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 차체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33	자동차용 신제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제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제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제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제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제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제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제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제품 의자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제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